

定 款

담양 가볼만한 곳

담양 가볼만한 곳 (정관)

2016. 02. 1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담양 가볼만한 곳’(이하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는 담양군 지역을 포함해 국내의 숙박업, 음식점업, 체험 학습장업, 여행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과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등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환원사업에 우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 길 2-13. 메타체 협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별 대표축제 발굴 육성사업
3.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컨설팅사업
5. 숙박업 예약 대행업
6. 체험 학습장 예약 대행업
7. 민박 예약 대행업
8. 음식점 예약대행업
9. 마을기업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
10. 여행사업
11. 식품가공업 및 판매사업

10.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마케팅 사업
11. 행사대행업, 12. 유원지운영관리업,
13. 주차장관리업 14. 뷔페식당업
15. 제과점업 16. 관광안내업
17. 관광가이드업 18. 관광통역업
19. 관광가이드업 20. 관광객조직업
21. 행사(축제) 및 박람회 개최업 22. 영화관업
23. 공연사업 24. 축제품 판매업
25. 자전거 및 전동이동수단 대여업 25. 야채 및 과일 판매업
26. 농산물판매대행업 27. 펜션관리업
28. 민박관리업 29. 카페운영업
30. 문화시설관리업 31. 테마공원운영업
32. 체험학습장경영업 33. 미술관업
34. 캠핑장 및 글램핑장업 35. 놀이시설운영업
36. 딸기잼만들기체험개최업
37. 여행 및 관광관련 홈페이지 운영업
38. 여행 및 관광상품 판매쇼핑몰업
39. 단체 관광조직업 40. 동호인단체조직업
41. 동호인단체 행사 개최업
42. 여행 및 사업정보 제공업
43. 농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사업
44. 드론과 관련한사업 45. 인터넷을 통한 사업
46. 농어촌 관광사업 47.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사업
48.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사업
49. 축제관련사업
50. 고추장·된장·장아찌류 가공·유통·판매사업
51. 김치가공·유통·판매사업, 52. 과일·유통·판매사업
53. 떡가공·유통·판매사업, 54. 말(馬)수입·유통·판매사업
55. 승마장 경영·교육·사육사업, 56. 음악회 및 공연개최업
57. 문화공연개최사업 및 부대사업 58. 축순관련사업
59. 발작물 및 과수 재배업 60. 쌀 및 잡곡재배 유통사업
61. 농작물 재배사업, 62. 도, 소매업,
63. 곡물가공 및 유통 판매사업, 64. 무역업
65. 인터넷홈페이지 및 쇼핑몰제작사업

- 66. 인터넷 콘텐츠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대행사업
- 67. 텃밭운영 및 분양사업
- 68. 동호인단체관련 사업
- 69. 전자상거래사업,
- 70. 요식업 체인사업
- 71. 드론판매사업,
- 72. 가축 및 동물사육사업
- 73. 통신판매사업,
- 74.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사업
- 75. 농산물 및 식품 수출입대행업,
- 76. 광고대행사업
- 77. 민박 및 펜션 이용 정보제공 및 중개사업
- 78.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79.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70. 여행관련협회 및 단체운영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의 목적에 따라 출자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단체 회원, 광고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 출자회원 이란 : 조합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출연하고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 정회원 : 출자금을 출자하고 자기 사업정보와 서비스를 등록하는 회원 ☐ 준회원 : 출자금 없이 자기 사업정보와 서비스를 등록하는 회원 ☐ 일반/단체회원 : 본 단체에 가입 목적이 있는 회원 ☐ 광고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광고할 목적으로 가입한 국내와 해외거주 하는 개인 및 법인회원 ☐ 기타 : 본 단체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회원

제6조 (입회) 본 단체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 (회비) 본 단체의 회비는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자회원 및 정회원의 권리)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출자회원 및 정회원에 한하여 본회의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출자회원 및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③ 출자회원 및 정회원은 본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단, 광고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는 회원 탈퇴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 표 1인
2. 운영위원 4인
3. 감 사 1인(감사는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본 단체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 단체의 임원은 출자회원 및 정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본회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대우)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출자회원 및 정회원으로 구

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와 이메일, 문자 등 연락수단을 포함해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①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출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사업대행 및 예약, 판매 수수료
6. 회원사의 사업대행을 통한 수익금
7. 사업을 통한 수익금
8. 기타

② 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차입금) 본 단체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이익금) 본 단체의 이익금은 목적사업의 운영 및 사회 환원의 용도 외 배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장 사무국 및 지부

제39조 (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을 포함한 각 지역에 지역본부 내지 지역 센터 내지 사무국을 둔다.

② 지역본부 내지 지역 센터 내지 사무국에는 본부장 내지 센터장 내지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본부장 내지 지역 센터장 내지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지역본부 내지 지역 센터 내지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지역본부 내지 지역 센터 내지 사무국의 직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30%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 (단체해산) ①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의 총회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담양 가볼만한 곳’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16. 02. 19.

담양 가볼만한 곳

▲ 본 단체정관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초안을 기초로 입안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정관의 제4조(사업분야)와;

제12조(임원 종류와 정수), 제16조(임기) 등에 대해서만 발기인이 창립총회 등을 통해 최종 승인한 사항임을 알려드

립니다.

알림 : 운영 및 사무총괄 : 김 종 연